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 강선우·한정애·조 국

홍기원 · 백승아 · 김영환

전현희 · 황 희 · 문진석

서영석 · 송옥주 · 이원택

염태영 · 김선민 · 김민석

문정복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·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, 개발절차 간소화, 용적률 등도시·건축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임.

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된 이후, 현재까지 전국에 총 9만 1, 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57개 후보지가 선정되었고, 이 가운데 총 1만 8,000가구 규모의 13개 지구가 본지구로 선정되었으며, 이 중 3,079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4개 지구가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민간 사업에비해 사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.

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,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곧 일몰이 도래하게 되며, 일몰이 도래할 경우, 아직 예정지구 지정을 받지 못한 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·제4조).

법률 제 호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3년간"을 "6년간"으로 한다.

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024 년"을 "2027년"으로 한다.

같은 부칙 제4조 중 "2024년"을 "2027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제2조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제2조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) -----제2호의2, 같은 조 제3호마목, 제4조제1항제6호, 제33조, 제34 조제1항, 제5장의3(제40조의7부 터 제40조의13까지) 및 제57조 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 -----6년간-----다.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현물보상 유효기간) 제27조 제2조(현물보상 유효기간) -----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-----2027년-----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제4조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4조(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) 제40조의8 및 제40 유효기간) -----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 -----2027년-----지 효력을 가진다.